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8일, 김남희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희의원)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

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 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음.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 기준 96.2%로 나타나 가이드라인을 완전하게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인건비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미준수시 그 사유 및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국고지원시설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에 관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준수 의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